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 수행 등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 수행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4월 6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 수행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회가 해당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12조의4 및 제24조의4), 공인노무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3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정 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증보험에</u> 가입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 ----- ----- ----- <u>보증보험 또는 제24조의4에</u> <u>따른 공제에</u> -----. <u>제24조의4(공제사업) ① 공인노무사</u> <u>회는 제12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u> <u>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u>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보증보험</u>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② (생략)	<u>위하여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u> ② <u>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③ <u>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u> 제30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 ----- -----<u>보증보험</u> 또는 <u>공제</u>에-----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에서는 개업노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¹⁾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이용을 하고 있으나,³⁾⁴⁾⁵⁾ 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가입 중인 보증보험은 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부를 보증하는 데

1)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공인노무사회 보증보험 가입 인원 규모: 법인 670개, 개인 643개 가입

4)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개인노무사는 15,000~25,000원/년, 노무법인은 71,000원~133,000원/년의 비용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함. 참고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금액은 가입시기, 보상금액한도, 신용도, 요율(현재 0.071%)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

5)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자격사 협회 중 세무사·법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및 관세사는 공인노무사와 동일하게 0.071%의 보증보험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0.11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에 그치고,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담보 범위 밖에 있어, 실제 분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불법행위 유형 청구에 대해서는 담보 공백이 생기는바 그 부담을 노무사 개인이 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⁷⁾

다만, 공제사업은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으로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제 부실화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⁸⁾ 건전성 규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제

6)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매년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실제 공인노무사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지급한 사건은 2020년 이후 1건(2022년 8월, 450만원)으로 실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7)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이를 통한 손해배상지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지불되어 소멸되는 보험료 대신, 공제회비로 적립하는 등 공제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존 보증보험과 동일하게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제기금 적립 규모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담보하는 종합 배상책임공제로 이를 확대하는 방향이 가능하여 의뢰인 재산권 보장이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함.

8) 공제사업의 경우 채무건전성, 리스크관리, 상품판매 및 영업행위, 공시의무, 준법감시 체계 등 금융감독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임.

42조),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제42조의2), 금융감독원 원장의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제42조의3),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개선명령(제42조의4),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경우 임원에 대한 제재(제42조의5) 등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⁹⁾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¹⁰⁾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의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외에 공인노무사회의 공제가입을 추가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공제계약 해제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소관부

9) 「법무사법」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10) 「변호사법」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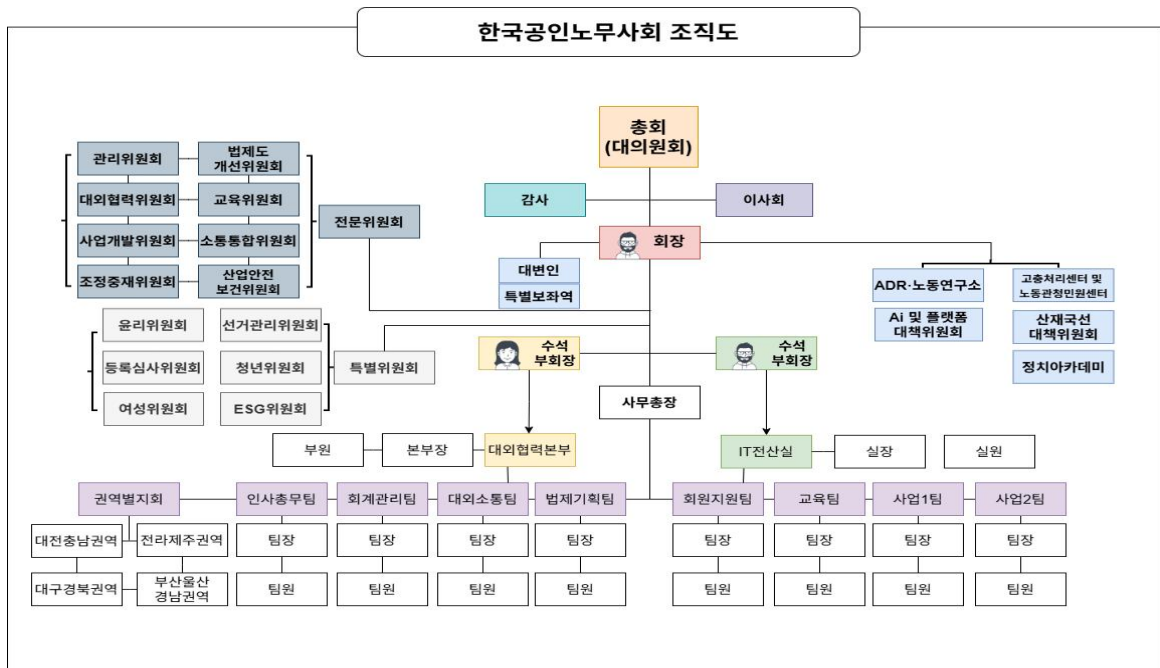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제사업을 통해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개업노무사에게 합리적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0

참고 1 한국공인노무사회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창립일: 1986. 4. 16.(법인설립 인가: 1986. 6. 17.)



□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현황

○ 1985년부터 현재까지 총 8,648명이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 자격시험합격자 7,080명(81.9%), 노동행정경력자 1,568명(18.1%)

□ 개업노무사 현황: 4,691명('26.7.31. 기준)이 활동 중

(단위: 명)

자격취득	노무사회 가입	직무개시 등록	개업노무사 (등록자 중 휴업·폐업 제외)
8,648 (100%)	6,294 (69.8%)	6,061 (68.8%)	4,691 (50.8%)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직무개시 등록시 의무가입 대상임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공인노무사회 보증보험 가입 인원 규모

－ 법인 : 670개 가입

－ 개인 : 643개 가입

참고 2

공인노무사 외 각 자격세별 공제사업 현황(자료: 공인노무사회)

구분	보장수단			운영형태 (기금/재단)	공제회 가입금액	용도제한	복지
	보증 보험	공 제 사 업	공 탁				
세무사	○	○	○	[개인] 보험또는 공제사업 가입 [법인] 손해배상준비금/책 임보험 가입	[개인] 세무사 1명당 3천만 원 이상 [법인] (소속 세무사 수 × 3천만 원) 이상 책임보험 가입 또는 매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 적립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없이 손해배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법령상 근거없음. 다만, 세무사회 공제회규정에 근거하여 은퇴·노령 공제금, 일시지급금, 경조금 지급 및 복지자금 대출 등 운영
법무사	○	○	X	[개인/법인]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개인] 2억 원 이상 [합동/법인] 1인당 1.5억 원 이상 (또는 법인당 1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외 목적 사용 금지 (단, 기금 120억 원 초과 시 이사회 결의로 초과액 환급 가능)	법령상 근거 없음. 다만, 법무사회 손해배상공제규정상 퇴회 또는 사망 등의 상황에 대해 공제료 중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	○	○	X	[개인/법인]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개인] 청구당 1억 원 이상 [법인] 소속 변호사 수 × 1억 원 이상 (또는 법인당 2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별도 계리 의무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법령상 근거 없음 (내부 규정장 명시 적인 복지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음)
공인 회계사	○	○	X	[개인]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법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개인] 1인당 5천만 원 이상 [법인] 연 총매출액의 2% 적립(평균 매출의 10% 도달 시까지) + 공동기금 별도 적립	금융위 승인 없이 손해배상 외 용도 사용 금지 퇴사 직원에게 이익배당 형태 반환 불가	법령상 근거 없음 (내부 규정 확인 필요)
공인 중개사	○	○	○	[개인/법인] 보험, 공탁, 또는 공제사업 가입	[개인] 2억 원 이상 [법인] 4억 원 이상 (분사무소당 2억 원 추가 설정)	별도 회계 관리 의무 및 책임준비금 타 용도 사용 시 장관 승인 필요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내 회수 금지	법령상 복지기금 운영 근거 명시됨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 구분 운영,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규정 확인필요)

구분	보장수단			운영형태 (기금/재단)	공제회 가입금액	용도제한	복지
	보증 보험	공 제 사 업	공 탁				
감정 평가사	○	○	X	[개인/법인]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개인/법인 공통] 감정평가사 1명당 1억 원 이상	법령상 근거 없음(협회 내부 규정 확인 필요)	법령상 근거 없음 (협회 내부 규정 확인 필요)
변리사	○	X	X	[개인/일반법인] 자율 가입 (법령상 의무 규정 없음) [유한법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	[유한법인] 청구당 1억 원 이상, 연간 '인수×1억' 또는 '10억' 중 큰 금액 이상	지식재산처장 승인 없이 손해배상 외 용도 사용 금지	해당없음(공제사업 미운영)
행정사	○	X	○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명시되거나 보증수단 가입 의무 규정 미비 [법인] 업무신고 후 15일 이내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의무화	[법인] (법인구성원+소속행정 사 수) × 1천만 원 이상 또는 법인당 1억 원 이상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목적으로 한정	해당없음(공제사업 미운영)
경영 지도사	○	X	X	[지도법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준비금] 매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 [책임보험] (소속 지도사 수 × 400만 원) - (적립한 준비금) 이상	중기부장관 승인 없이 손해배상 외 용도 사용 및 보험 해지 금지	해당없음(공제사업 미운영)
관세사	○	○	○	[개인/통관취급법인] 보험, 공제, 공탁 중 선택 [관세법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인] 관세사 1명당 1,000만 원 이상 [관세법인] 매 기수 총매출액의 2% (준비금이 '인원×1천만 원' 미달 시 보험 병행)	관세법인 준비금은 관세청장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 금지	법령상 근거 없음 (내부 규정 확인 필요))